#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43

제출연월일 : 2017. 5. 2. 제 출 자 :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 분법에 따른 자치법규 체계 개편 사항 반영 및 행정자치부 기 본안에 따라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 나. 조례 위임 규정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반영한 조례 신설 및 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 등을 정비
- 나.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반영한 신설 및 조례 목적 등 자구정비(안 제1조)
-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경감율, 감면기간, 공제금액 등)만 조례로 정하고,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8조)
- 라. 감면 제외대상,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및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규정(안 제7조부터 제15조)

#### 3. 근거법규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92조의2, 제177조의2, 제180조, 제184조
- 나. 「지방세법」 제13조, 제30조, 제32조, 제111조, 제112조, 제122조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5
- 라. 「항만공사법」 제8조

#### 4.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17. 3. 17. ~ 2017. 4. 17.(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730호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5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울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 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제7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 함하다.
-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 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 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 제1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조에 따른 감면
-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 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근거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16)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 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
    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⑤ 생략)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1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sup>16)</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sup>17)</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18) ①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 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19)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sup>18)</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sup>19)</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20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u>「지방세법」</u>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 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83조(감면신청 등)<sup>21)</sup>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u>

<sup>20)</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12조(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sup>21)</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13조(감면신청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뒤꼭의 작성방법을 삼고하시기 마라며, 색상이 어두운 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          | (앞쪽)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 5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상호(법인명)    |     |           |  |                  | 사업자등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 또는 영업소  |     |           |  |                  |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전화번호<br>(휴대전화번호) |            |          |       |    |              |
| 감면대상                                            | 종류         |     |           |  | 면적(수량)           |            |          |       |    |              |
|                                                 | 소재지        |     |           |  |                  |            |          |       |    |              |
| 감면세액                                            | 감면세목       |     | 과세연도      |  |                  | 기분         |          |       |    |              |
|                                                 | 과세표준액      |     | 감면구분      |  |                  |            |          |       |    |              |
|                                                 | 당초 결정세액    |     | 감면받으려는 세액 |  |                  |            |          |       |    |              |
| 감면 신청                                           |            |     |           |  |                  |            |          |       |    |              |
| 사유                                              |            |     |           |  |                  |            |          |       |    |              |
|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 IJ        |  | п                | 71.0       | 뭐 지하다    | l TJI |    | <del>-</del> |
| 근거규정                                            |            |     | 제 조 및 같은  |  | 법 시행령 제 조        |            | <u> </u> |       |    |              |
| 관계 증명                                           |            |     |           |  |                  |            |          |       |    |              |
| 서류                                              |            |     |           |  |                  |            |          |       |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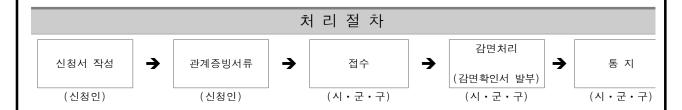
210mm×297mm [백상지(80/m²) 또는 중질지(80/m²)]

### 22)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13조(감면신청 등)

(뒤쪽)

#### 작성방법

-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sup>23)</sup>(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u>5년</u>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u>2</u>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u>5년</u>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u>2년</u>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sup>23)</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각각 공제한다.

-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 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u>「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u>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u>같은 법 제5조제1항</u>에 따라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 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 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 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가. 외국인투자기업
  -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 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 우
-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2. 삭제 <2014.1.1.>
-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u>3년</u>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u>2년</u>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u>3년</u>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u>2년</u>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 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24)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 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 2의2.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
-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사업
-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 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sup>24)</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5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 「지방세법」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 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 2. 골프장: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u>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

<sup>25)</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8조(감면제외대상)

의 입목

-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 링링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 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 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 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 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 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제30조(신고 및 납부)26)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sup>26)</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9조(과세면제 또는 세액의 신고납부)

다.

-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sup>27)</sup>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28)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sup>27)</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9조(과세면제 또는 세액의 신고납부)

<sup>28)</sup> 울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제12조(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 □ 행정자치부 기본(안)

# 구세 감면조례 기본안

○○특별(광역)시 ○○구 구세감면조례 기본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 특별(광역)시 ○○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감 면

-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
  - 1. 2016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75
  - 2.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 100분의 50
-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특별(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으로 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50** 추가 경감률 범위에서 개정 최고50% 추가경감시 최소납부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 규정 필요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를 추징한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 문의 "5년"을 "()년"으로 하고, "2년"을 "()년"으로 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 )년"으로 하고, "2년"을 "( )년"으로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15년10년**의 범위에서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개정
-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 )원
  -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 )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액 범위에서 개정

### 제3장 보 칙

-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다.
- 제10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 제12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 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제2조 및 제7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적용시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다
  - 가. 제00조, 제00조, 제00조: 2018년 1월 1일
  - 나. 제00조: 2019년 1월 1일
  - 다.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 안 번 호

1343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7. 5. 2.(화)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7. 5. 8.(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7. 5. 15.(월)

###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국장 김성규)

###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기간, 공제금액 등은 조례에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 정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2) 감면 제외대상, 중복감면의 배제, 감면신청 및 감면기한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 다. 근거법규

-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92조의2, 제180조, 제184조
- 2) 「지방세법」제13조, 제30조, 제32조, 제111조, 제112조, 제122조
-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1조의5
- 4)「항만공사법」제8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영환)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감면사 항을 반영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O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